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55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서천호·김선교·우재준

김예지 · 정희용 · 이양수

정성국 • 서명옥 • 진종오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 수리 산업의 경우 높은 자재비와 인건비 및 유지비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비용의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어선 수리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어선의 수리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7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의 수리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9) ①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	
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	
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	
해서만 <u>적용한다</u> .	<u>적용하며, 제7호는 2028</u>
	<u>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u>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u>
	른 어선의 수리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
	<u>령으로 정하는 것</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